#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4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· 강훈식 ·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 • 박희승 • 이용우

이재정 • 박홍근 • 양부남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 중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5·18희생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5·18희생자와 5·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타5·18희생자와 5·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을 포함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 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하도록 함(안 제34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"를 "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따른"을 "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"로 한다.

제34조의2 전단 중 "보훈병원에서의"를 "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"로, "보훈병원 외"를 "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진료) ① ~ ④ (생 략)	제34조(진료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수</u>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⑤
해당하는 사람은 <u>보훈병원</u> 에서	<u>제</u> 1항에 따른
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	의료기관
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	
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	
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	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항
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	을 준용한다.
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	
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	
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	⑦
에 <u>따른</u>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	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
의 방법・절차・범위 및 상한	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
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.</u>
제34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	제34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	
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	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	

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<u>보훈병원</u>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<u>보훈병원 외</u>의 의료기 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 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 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<u>제34조제1</u>
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
제34조제1항에 따른 의
료기관 외